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영농환경 개선,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
- 나.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·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
- 다. 농업의 규모화·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요건 완화 필요
- 라. 농업진흥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
- 마. 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반영 필요

3. 주요내용

- 가.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(안 제29조제2항·제3항·제6항·제7항, 제30조제1항 개정)
- 나.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(안 별표3 개정)
- 다.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(10→5)를 축소하고,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(안 제16조제3호 개정)
- 라. 시·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(안 제27조제2항 개정)

- 마.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
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
하여 의미의 명확화(안 제3조제2항 개정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
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(안 제44조
제3항 개정)
- 사.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
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(안 제44조
제5항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“축사·곤충사육사”를 “축사(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 시설은 제외한다)·곤충사육사”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”을 “농업인이 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농업법인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을 포함한다.)

제27조제2항 중 “자치구구청장”을 “자치구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1만5천제곱미터[미곡의 건조·선별·보관 및 가공시설(이하 “미곡종합처리장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]”를 “3만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”을 “보관시설, 농업인 복지회관 및 무더위·한파 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제8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1만제곱미터”를 “2만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

가. 내국인 근로자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일 것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

다.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

라.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다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

제30조제1항제1호 중 “2만제곱미터”를 “3만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4호 중 “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를 “법 제36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4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제3호 중 “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”를 “대하여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”로 한다.

제44조제3항제2호 중 “자목까지 및”을 “자목까지,”로, “시설”을 “시설,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따른 묘지와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2호 및 제29호”를 “제12호, 제29호 및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고

각각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한다.

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4조”를 “법 제34조제1항”으로, “농지전용허가의 신청”을 “농지전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허가신청농지”를 각각 “허가 또는 신고 신청농지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하려는 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거나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2만원

라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

제74조제1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하려는 면적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거나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1만원

라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

별표 3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	농촌특화지구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농지의 범위) ①·② (생략)	제2조(농지의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축사·곤충사육사</u> 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	나. <u>축사(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 시설은 제외한다)·곤충사육사</u> ----- -----
다. ~ 마. (생략)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) 법 제15조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	제16조(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)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
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
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
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
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
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
수가 10 이상인 단체

<신 설>

제27조(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)

① (생 략)

②시·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
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
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
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
에게 보고하고, 해당 지역을 관
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
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29조(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
있는 행위) ① (생 략)

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

3. -----

-- 농업인이 5명 -----

4. 농업법인(「농어업경영체 육
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
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
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을 포
함한다.)

제27조(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자치구

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

있는 행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물(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가공·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관련 시험·연구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 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,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
가. (생 략)

나.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[미곡의 건조·선별·보관 및 가공시설(이하 “미곡종합처리장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] 미만인 시설(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

-----.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----- 3만제곱미터 -----

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
시설에 한정한다)일 것

2. 3. (생략)

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
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
의 시설 및 이용 시설”이란 다
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농
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
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
설치하는 일반목욕장, 화장실,
운동시설, 구판장, 농기계 보
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

④ ~ ⑥ (생략)

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
“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
다.

1. 삭제

2. ~ 7. (생략)
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보
관시설, 농업인 복지회관 및
무더위·한파 쉼터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-----

--.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가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

1) ~ 3) (생략)

나. (생략)

9. ~ 10. (생략)

<신설>

가. -----

- 2만제곱미터 -----
-

1) ~ 3) (현행과 같음)

나. (현행과 같음)

9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

가. 내국인 근로자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일 것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

다.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

라.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다

	<u>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</u> <u>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</u>
제30조(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)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“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·공작물, 그 밖의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30조(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<u>2만제곱미터</u> 미만인 것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3</u> <u>만제곱미터</u>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7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) ① (생략)	제37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(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10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·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(법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5. ~ 8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38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·신고의 기간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(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“도시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법 제36조제1항 제2호, 제3호 및 제4호-----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·신고의 기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바목, 제6호, 제11호,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

4. ~ 9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. <후단 신설>

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-----

— —

3. -----
----- 제12
호, 제29호 및 「관광진흥
법」에 따른 야영장-----

4. ~ 9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를 같은
종류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고
각각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
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

⑥ (생 략)

제74조(수수료) ①법 제56조에 따
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
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
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: 다음
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
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
우에는 2만원

나.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
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
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
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
원을 가산한 금액

<신 설>

<신 설>

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
하여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4조(수수료) ①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34조제1항-- 농지전용
허가 -----

가. 허가 또는 신고 신청농지

나. 허가 또는 신고 신청농지

다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
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
서 변경하려는 면적의 변
동이 없거나 감소하거나
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
제곱미터 이하로 증가하는
경우에는 2만원

라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

3.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
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: 다
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
서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
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
증가하는 경우에는 2만원
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
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
액

3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
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
서 변경하려는 면적의 변
동이 없거나 감소하거나
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500
제곱미터 이하로 증가하는
경우에는 1만원

라. 허가 또는 신고 이후 그
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
서 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
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
증가하는 경우에는 1만원
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
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
액
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9